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02.03.(수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1. 08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1. 12.

라. 상정일자 : 제268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21년 2월3일 상정·의결)

- 제안설명 : 조동희 행정국장
-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-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市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, 센터의 운영,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
나. 주요골자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 형태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, 제8조)
-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-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7조에 맞춰 결산서 제출기일을 정비(안 제10조제2항)
 - 결산서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→ 2월말까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○ (안 제6조) 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

- 안 제6조제2항은 「자원봉사법」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¹⁾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(법인운영, 위탁운영, 직영운영)*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²⁾에 따라 조례로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정하는 사항임.

* 타 특·광역시 운영형태

(2020년말 기준)

서울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
사단법인	사단법인	위탁	사단법인	사단법인	사단법인

(참고) 운영형태 용어 정의

-
- 1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2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~⑤ (생략)
- ⑥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- 법인운영 -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
- 위탁운영 -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
- 직영운영 -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

※ 출처 :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[행정안전부 · (재)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공동발간]

- 현행 조례 제6조제3항은 「자원봉사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장 선임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안 제6조제2항에서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임. 참고로,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**자원봉사법 일부개정법률안³⁾**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임.

○ (안 제6조의2)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 신설

- 안 제6조의2는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(사단법인)에 맞게 「자원봉사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⁴⁾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,

3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7038, 제출연월일 2020.12.30.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: (생략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.

4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3.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
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- 제1항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며,
- 제2항은 법인이 직접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 센터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단체와 연계를 강화하려는 법인운영의 취지에 부합하며,
- 제3항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「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(2020년)」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는 사항임.

○ (안 제8조) 센터의 운영 등

- 안 제8조는 「자원봉사법 시행령」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, 다른 조문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안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센터의 운영형태(사단법인)를 기준으로 현행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.
- 안 제8조제1항은 「자원봉사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⁵⁾ 단서조항에 따라 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, 안 제8조제2항은 이사회 구성에 관하여 「자원봉사법 시행령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법인운영이 아닌 센터의 운영위원회

5)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 ① (생략)

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에 적용할 규정이지 법인 이사회 구성에 적용할 규정이 아니며 또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사항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함.

- 아울러, 현행 제8조제5항 “기타 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 는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센터는 「민법」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.</p>	<p>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<삭 제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 다만, 시장이</p>	<p><삭 제></p>	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	<p>② ----- --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<삭제></p>
--	---	---

○ (안 제10조제2항) 센터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

- 안 제10조제2항은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7조⁶⁾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제2호⁷⁾에 따라 시장의 센터에 대한 지도·감독을 위한 매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기한을 현행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는 사항임.

6) 「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7조(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)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
7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7조(행정안전부 소관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

1. (생략)
2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(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에 관한 권한

○ (부칙) 시행일

- 본 개정조례안은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조항인 안 제6조제3항만을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
- 안 제6조제3항이 현행조례 제6조제2항과 내용의 변경이 없어 3월 2일 시행에 의미가 없으므로 부칙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.

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	부 칙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<u>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u>	----- <u>시행한다.</u>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원봉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안 제6조제2항 센터의 운영형태를 사단법인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현행조례 중 사단법인 형태의 센터 운영과 관련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여 신설하는 등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조성혜 위원 >

-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?
⇒ (행정국장)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음.
- 예산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인인지?
⇒ (행정국장) 그러함.
- 법인과 인천시의 관계는?
⇒ (행정국장) 법인을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.
- 법인의 성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.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이라고 보임.
⇒ (행정국장)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보시면 됨.

< 김국환 위원 >

- 군구는 센터장 선임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.
⇒ (행정국장) 자원봉사법시행령 자격요건 및 절차에 따라 센터장을 선임하게 되어 있음.
- 사회복지 종사 기간은?
⇒ (행정국장) 시행령에는 3년으로 되어 있음.
- 사회복지 경력 인정 기준은?
⇒ (행정국장) 법인에서 판단할 것임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- 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- 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표 수정

- 안 제6조제2항 중 “사단법인” 을 “비영리법인” 으로
- 안 제8조제2항 중 “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” 를 “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” 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며
- 부칙 중 “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” 를 삭제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- 붙임 1. 수정안 본문 1부.
- 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- 3.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사단법인”을 “비영리법인”으로

안 제8조제2항 중 “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”를 “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”로 하며,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한다.

부칙 중 “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”를 삭제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<u>사단법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<u>20인</u> 이하로 구성하되, <u>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<u>기타 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<u>비영리법인</u>으로 한다.</p> <p>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법인</u>의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<삭 제></p> <p>부 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[붙임3]

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센터장”을 “자원봉사센터장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**비영리법인**으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)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.

②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

③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,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3월말”을 “2월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<u>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조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----- 자원봉사센터장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6조의2(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) ① 자원봉사센터장은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한다.</u></p> <p>② <u>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할 때</u></p>

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센터는 「민법」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 다만,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구성하되,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

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,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제8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이사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⑤ 기타 센터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)

① (생략)

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<삭 제>

제10조(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 2월말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